

#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

**성 북 구**  
**(문화체육과)**

#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6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6년 2월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)제1항에 의거 ‘2026 성북 시티투어’ 를 운영 목적으로,
- 나.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,
- 다.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요청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개요

- 위탁사업 :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
- 위탁기간 : 2026. 4. ~ 11. (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시티투어 종료 시까지)
- 위탁내용 : 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 및 관리
  - 성북 시티투어 사업계획(코스개발 등) 수립을 통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
  - 이용자를 위한 예약 시스템 개발·운영 및 신청접수 관련 업무
  - ‘2026 성북 시티투어’ 운영을 위한 홍보
  - 수행인력, 버스임차(버스랩핑 포함), 안전관리, 관광편의 제공 등
  - 기타 성북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  - 그 밖에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

- 위탁비용 : 총100,000천원
- 수탁 참가 자격
 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
  -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에 의거 여행업에 등록된 자
    - ※ 여행업 : 종합여행업, 국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
  - 대형버스(45인승) 확보(전세버스회사 임대계약 포함) 가능한 사업자
  - 지방자치단체(또는 공공기관)에서 시티투어버스 운영 또는 관광순환(셔틀)버스 등 유사 관광교통 업무를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운영한 사업자
  - 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주사무소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인 자
- 위탁업체 선정 : 공개 모집 후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심의 후 선정

#### 나.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)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‘2026 성북 시티투어 운영’ 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,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
-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기관·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지방자치법

####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## ○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

#### 제5조(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)

-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##### ○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####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본예산 편성(민간위탁금 100,000천원)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